

# 수익권증서

A 61364

증서번호 : 담보2018-12-4809호

신탁계약의 종 류	부동산담보신탁		
수익한도금액	—금사십사억이천만원整(W4,420,000,000)		
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	(주)위편딩대부 (110111-5766659)		
채 무 자	(주) (1 )		
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순 위	제2순위		
신탁 기간	신탁등기접수일부터 신탁종료일까지		
신탁부동산의 표 시	소재지	지목/구조	신탁면적
	(별첨 부동산목록 참조)		
신탁원본 가 격	금 1,245,000,000 원 ( 원본가 근거 : 장부가 )		
임대차 등 선 순 위	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수탁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음		
선 순 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	(별첨 우선수익자목록 참조)		
특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수익발생에 대한 판단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있음</li> <li>· 신탁등기가 완료되어야 본 수익권증서의 효력이 발생함</li> </ul>		

위탁자 (주) 및 (주)생보부동산신탁 간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【제18-8616호】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발행합니다.

이 증서의 내용이 신탁계약과 상이할 경우 신탁계약에 따릅니다.

2018년 12월 03일

위탁자

(주) (1 )

수탁자

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(대치동,

대표이사 김 인 환

